

## REACH (유럽화학물질관리제도)

### 1. 개요

<p>■ 정의</p>	<p><b>R</b>egistration, <b>E</b>valuation, <b>A</b>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b>C</b>hemicals, (화학물질관리법령)</p>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제사항임.</li> <li>- 유럽연합(EU)은 화학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EU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법령(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이하 REACH)을 제정하였음.</li> <li>- EU내에서 연간 1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및 화학물질이 포함된 완제품)에 대해 등록, 신고, 평가, 허가, 제한 등을 의무화하는 화학물질관리제도로써 2007년 6월1일 시행되었음.</li> </ul>
<p>■ 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기관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 <a href="http://echa.europa.eu">http://echa.europa.eu</a></li> <li>- 국내 관련기관 REACH 기업지원센터 <a href="http://www.reach.or.kr">www.reach.or.kr</a> REACH 도움센터 <a href="http://www.reach.me.go.kr">www.reach.me.go.kr</a> 중소기업의 환경규제대응지원 시스템 <a href="http://selfcheck.smba.go.kr">http://selfcheck.smba.go.kr</a></li> </ul>
<p>■ 대상품목</p>	<p>화학물질 자체 및 완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함량, 용도, 위험도에 따라 등록/신고/평가/허가/제한 등의 차별화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함.</p>
<p>■ 적용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li> </ul>
<p>■ 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C Regulation 1907/2006</li> </ul>

## 2. 기관소개

### 가. 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

ECHA는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국가의 화학물질에 관한 등록, 평가, 승인 및 규제 절차를 관리하고 있다.

#### (1) 주요업무

ECHA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 모든 REACH 업무를 관리
- 유럽공동체내에서의 지속적인 적용을 확보
- 회원국 및 유럽 기관들에게 화학물질 사용에 관하여, 안전성에 대한 최선의 과학적 권고 및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의 의견을 제공함

#### (2) 조직구조

- 경영부(Management Board): 재무계획 입안, 업무계획, 연례 보고
- 상무이사(Executive Director): 기관의 공식적 대표자로서 기관의 경영 및 행정에 책임을 짐
- 사무국(Secretariat): 위원회 및 포럼을 지원하고, 정보의 제공, 안내, 데이터 유지의 준비 및 등록, 평가절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
- 가맹국 위원회(Member State Committee): 기관 및 가맹국에서 제출된 의견초안에 대한 의견차를 조정함
- 위험관리 위원회(Risk Assessment Committee): 평가, 승인신청, 규제제안 및 등급 분류에 대한 의견제시
- 사회경제 평가위원회(Committee for Socio-economic Analysis): 승인신청, 규제제-Forum: 법률 시행에 관한 가맹국간의 포럼
- 항소위원회: 기관에 의해 정해진 결정사항에 대한 항소사항 결정

#### (3) Contact

Annankatu 18 00120 Helsinki

Finland

TEL: +358-9-686180

E-mail: [info@echa.europa.eu](mailto:info@echa.europa.eu)

나. REACH 기업지원센터<sup>1)</sup>

‘REACH 기업지원센터’는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1) 주요업무

a. REACH 동향 분석 및 정보제공

- EU내 법안 진행상황 모니터링
- 비 EU 국가 대응동향 파악
- REACH 관련 최신동향 파악 및 분석자료 발간
- REACH 등록 지침서 (가이드) 발간

b. 상담실 운영

- 콜센터 및 온라인 상담, 방문상담 운영
- 사전등록 및 본등록 업무지원
- REACH 등록, 허가절차 및 제출서류 등 자문
- 제품 내 화학물질 규제 대상 여부 확인 및 시험분석 안내
- 화학물질 별 기업 컨소시엄 구성 지원

c. 현장방문 컨설팅 및 교육

- 전문가 Pool 구성 및 운영, 맞춤형 진단 및 컨설팅 지원
- 정기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 교육

d. 화학물질별 정보 DB 제공

- 등록에 필요한 화학물질 안전·위해성 정보 제공
- QSAR에 의한 물질정보 생산 및 DB 구축, 물질정보 제공

---

1) REACH 기업지원센터. [www.reach.or.kr](http://www.reach.or.kr)

-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화학산업지원정보시스템’ 활용

e. 홍보

- 홍보자료 발간
- REACH 뉴스 메일링

(2) Contact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 24 동관 18층

TEL: 02-2183-1515

FAX: 02-2183-71519

다. REACH 도움센터<sup>2)</sup>

REACH 도움센터는 국내 산업계의 EU REACH 대응 지원을 위해 ‘REACH 대응 추진기획단(06’9)’으로 발족된 후 2009년 1월부터 REACH 도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는 환경부 소속기관이다.

(1) 주요업무

a. REACH 동향 파악 및 국내 홍보·전파

- EU 공식회의 등 참석 및 국제 대응 동향 현지조사를 통한 정보수집  
CEO 간담회와 실무자 세미나 및 REACH 도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제공
- 브로셔, 사전등록 매뉴얼, 실무 지침서 등 제작 배포 및 REACH Navigator, E-learning 콘텐츠 개발
- 라디오 캠페인, 이코노미 리뷰 등 경제지, 협회지 광고 및 국정홍보처 전광판 홍보

b. 산업계 REACH 대응을 효과적, 실질적으로 지원

- 산업계 대응 지원을 위해 홈페이지, 유선, 대면 상담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

2) REACH 도움센터. [www.reach.me.go.kr](http://www.reach.me.go.kr)

도움센터(Helpdesk) 설치·운영

- 업체별 특성을 감안,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

## (2) Contact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

TEL: 02-2110-7950, 7965

FAX: 02-507-2457

라.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대응지원 시스템<sup>3)</sup>

### (1) 주요업무

- 환경규제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REACH 등록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온/오프라인 상담지원: REACH, RoHS 분야 전문가를 위촉,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관련 궁금 사항을 온/오프라인으로 상담지원하며, 규제별 대응가이드, 지침서를 보급한다.
- 온라인 시스템(<http://selfcheck.smba.go.kr>)을 통한 자가진단 등 정보제공: 환경규제시스템을 통해 자사제품에 대한 자가진단으로 REACH 사전등록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REACH 제도에 대한 분야별 e-learning 실시 및 유해물질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 환경유해물질 분석지원: 지방청의 환경유해물질 분석장비를 활용하여 제품에 대한 REACH 등 대상물질 분석을 지원하며, 지방청별 환경규제대응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REACH 사전등록비용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을 통한 컨설팅에서 사전등록번호 획득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50%~70%까지 지원한다.
- 친환경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형 친환경 대체(대용)물질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REACH 대응기관간 정보 공유로 중소기업에 최선 정보를 제공한다.

---

3) 중소기업청, “REACH 사전등록가이드”, 2008

## (2) Contact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TEL: (국번없이) 1357

## 3. REACH 정의 및 목적

REACH란,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줄임말로, 사용하는 물질(Substance)의 양,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EU의 '新E 화학물질관리제도' 이다. 이는 유럽시장에 출시된 화학물질들에 대한 위해성, 위해성 정보를 통합·평가하여, 고위험성 물질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반드시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 Agency: 이하 ECHA)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EU REACH의 사전등록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 4. 의무이행 주체

REACH 법률상 의무는 EU 제조·수입업자에게 있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등록 의사가 없거나, 국내 기업이 수입업자에게 물질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국내 기업은 유일대리인(OR)을 선임하여 등록해야 한다.

- 제조자(Manufacturer): EU 역내에서 물질을 제조하는 EU 역내에 설립된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 수입업자: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EU로 수입하는 EU역내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 유일 대리인(Only Representative; OR): REACH의 의무를 대행할 수 있는 EU 내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유일대리인(OR)은 기업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대행해야 한다. EU에 있는 시험분석기관, 컨설팅 기관, 법률회사, 글로벌 화학회사(BASF, Ciba 등) 등이 유일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우리 기업의 EU 현지 법인도 유일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5. 규제시행일정

EU의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체계는 지난 40여 년간 화학물질 관련 지침 규정, 권고문 등이 500여개 이상 제정되었었으며, 현재 40여개의 화학물질 관련법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 2003년 9월 REACH 초안이 발표된 3년 후 EU 이사회가 新 화학물질관리법인 REACH를 2006년 12월 18일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2007년 6월 1일 발효가 되었다.<sup>4)</sup>

### • REACH 이행일정표<sup>5)</sup>

구분		기간	
등록	기 존 물 질	사전등록 2008년 6월 1일 ~ 2008년 12월 1일	
		- 연간 1톤 이상 <b>CMR*</b> cat 1,2 물 질 - 연간 100톤 이상 <b>R50/53**</b> 물질 - 연간 1000톤 이상	~ 2010년 11월 30일
		연간 100톤 이상	~ 2013년 5월 31일
		연간 1톤 이상	~ 2018년 5월 31일
	신 규 물 질	연간 1톤 이상 2008년 6월 1일 ~	
신고	신고대상 물질	2011년 6월 1일 ~	
허가	허가대상 물질	2009년 6월 1일까지 공표되는 허가물질목록의 사용 허용 마감일로부터 18개월 전까지	
제한	제한대상 물질	2009년 6월 1일 ~	

- 신고대상물질: 2010년 12월 1일 이전 발표물질은 2011년 5월까지, 그 이후 발표물질은 6개월 이내
- 허가대상물질: 허가 관련 조항은 2008년 6월부터 시행
- 제한대상물질: 물질별로 제한 시점이 다를 수 있음

4)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전기산업 REACH 대응 길라잡이”. 2007

5) REACH 기업지원센터, “REACH 바로알기(발표자료) 2009.10”

\* CMR(Carcinogenic, Mutagenic, Reproductive toxicity):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CMR 카테고리 1,2 물질은 허가 의무가 있음.

\*\* R50/53: 수서생물에 매우 유독하고, 환경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

기존 화학물질은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본 등록은 연간 톤수에 따라 결정된다. 본 등록은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만 주어지며,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등록을 마쳐야 수출이 가능하다. 신물질인 경우에는 2008년 6월 1일부터 바로 등록절차가 진행된다.

## 6. 용어정의<sup>6)</sup>

### 가. 물질(Substance)

-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연상태 혹은 제조공정에서 얻어진 화학적 원소 및 그 화합물을 말한다.
- 액체, 기체, 고체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 나. 기존물질, 신규물질

- 기존물질은 1981년 9월 18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물질(Phase-in substance)로 EINECS(기존물질목록, 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에 등재된 물질을 말한다.
- EU 회원국에서 제조되었으나, REACH 시행 15년 이전에 적어도 한번 제조되었으나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과 REACH 시행 전에 EU 회원국의 시장에서 출시되고, Directive 67/548/EEC 6차 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나 REACH 상의 폴리머 정의를 만족하지 않는 물질(NLP, No longer polymer)도 기존물질로 분류되며 사전등록 대상이다.
- 신규물질(Non phase-in substance)은 1981년 9월 19일 이후 REACH와 유사한 절차에

---

6) REACH 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 REACH 가이드북”, 2008



따라 신고되어 ELINCS(신고물질목록, European List of Notified Chemical Substances)에 등재된 물질과 앞으로 나오게 될 물질을 말한다.

#### 다. 혼합물(Preparation)

-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섞어 놓은 것을 말한다. 혼합물 내에서 화학물질은 단지 물리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 혼합물의 예로는 왁스, 워셔액, 페인트, 합금괴, 고분자 펠렛(또는 그레놀 또는 파우더 또는 페이스트), 마스터배치, 콤파운드, 폭죽, 잉크 및 토너 카트리지, 세척포 등이 있다.
- 혼합물은 화학 반응 없이 2가지 이상의 물질을 섞어서 얻는 반면, 다성분물질(multi-constituent substance)은 화학 반응의 산물이다.
- 만약 혼합물을 구성하는 세 개의 화학물질이 각각 1톤을 넘으면 세 화학물질 모두에 대해 등록해야 한다. 반면 다성분물질은 '화학물질 명명 및 분류'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 볼펜 내 잉크, 크레파스, 양면 접착테이프, 수정테이프 등 화학물질을 배출하면서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는 모두 혼합물로 분류되어 물질별 등록을 고려해야 한다.

#### 라. 완제품(Article)

- 완제품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고체상태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REACH에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보다 특정 형태, 표면 및 디자인이 기능을 결정하는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다.
- 자동차나 TV 등은 여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완제품인데 부품도 개별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이 된다.

#### 마. 의도적 배출(Intended release)

- 완제품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완제품의 주기능이 아닌 경우 '의도적 배출'이라고 한다. 완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이 있을 경우 연간 1톤 이상일 때 등록대상이 된다. 배출되는 물질이 세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두 가지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두 가지 물질에 대해 등록해야 한다.
- 완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이 같은 용도로 이미 등록되었다면 그 물질에 대해

서는 등록이 면제된다.

#### 바. 비의도적 배출(Unintended release)

- 완제품에서 사용 또는 폐기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비의도적 배출’이라고 한다.
-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고위험성 물질(SVHC)이고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이며 연간 1톤 이상인 경우에는 EU 화학물질청(ECHA)에 신고해야 한다.
- \* 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CMR, PBTs, vPvB등의 고위험성 물질로 신고, 허가, 제한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
- \* PBTs(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Substances): 잔류성이 강한 생체 축적 독성물질로서 허가 의무가 있음
- \* vPvB(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잔류성 및 생체 축적성이 매우 심한 물질

#### 사. 단량체(Monomer)

특정 공정에 사용되는 적절한 고분자형성반응 조건 하에서 추가적으로 일련의 같거나 다른 분자로 공유결합을 형성 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 아. 고분자(Polymer)

한 가지 이상의 단량체 단위(monomer units)의 배열(sequence)로 특징지어진 분자들(molecules)로 구성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자들은 분자량이 어떤 범위로 분포되어야 하며, 이 분자량의 차이는 주로 단량체 단위의 수가 다른 것에 기인한다. 고분자는 아래의 사항을 수용한다.

- 최소한 1개 이상의 다른 단량체 단위나 다른 반응물(reactant)과 공유결합되어 있는 최소한 3개 이상의 단량체 단위를 포함하는 분자의 무게가 과반수
- 동일한 분자량을 가진 분자의 무게가 과반수 미만

자. 수송분리중간체(Transported isolated intermediate)

- 중간체(Intermediate)란 다른 물질로 합성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상요되는 물질이며, 수송분리중간체는 서로 다른 사이트 간에 이송되거나 다른 사이트로 공급되는 중간체이다.
- 중간체가 엄격히 관리되는 상태에서 다른 물질을 합성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거나 사용자로부터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등록 요건이 일반 화학물질보다 매우 완화되어 있다.
- 단량체도 일종의 중간체이나 중간체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제6조제2항)
- 수송분리중간체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제2조제8항)

차.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a. 물질정보교환포럼은 같은 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들이 모이는 기구로 사전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SIEF의 회원이 된다.
- b. SIEF를 운영하는 목적은 불필요한 시험(특히 동물시험)을 배제하고 자료공유를 하는 것이다.
  - SIEF에서 동물시험 자료는 강제로 공유되며, 나머지 자료도 요청할 경우 공유해야 한다.
  - 자료를 공유할 때에는 공평하고, 투명하며, 차별이 없도록 비용분담을 해야 한다.
- c. SIEF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EU화학물질청은 SIEF 운영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는다.
- d. SIEF 회원들은 서로 같은 물질을 등록하기 위해 모였는지를 확인한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등록을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좋다.
- e. SIEF 회원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비용 분담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된다.
- f. SIEF에 회원이 모인 것 자체는 컨소시엄이 아니며, 본 등록을 할 때 여러 회원이 모여 공동등록(Joint submission)을 할 수 있다.
  - 공동등록시 선도등록자(lead registrant)가 공통정보를 우선 등록하고 나머지 등록자가 개별적으로 나머지 정보를 등록한다.
  - 기업비밀을 이유로 개별 등록을 할 때에는 이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카. Read-across, QSAR

- Read-across: 유해성 자료 등 정보가 있는 물질과 대상 물질을 비교하여 유해성을 도

출하는 방법

- QSAR(Qualitative or 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유해성 시험을 하지 않고도 물질의 분자 또는 분자 구조의 연관성을 비교하여 유해성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 REACH에서는 가급적 동물시험을 배제하며 그 중의 하나로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예측한 물질자료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다.

## 7. 규제적용대상 및 범위

### 가. 규제적용 구분

EU 내 제조, 수입, 시장출시 및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적용되며, 혼합물과 완제품 내에 포함된 화학물질 또한 적용대상이다. 사용물질의 양과 위험도에 따라 등록, 신고, 평가, 허가, 제한 등으로 규제방식이 구분된다.

### 나. 규제대상

- 화학물질과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각의 화학물질, 그리고 완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 별로 연간 1톤 이상이면 등록대상이다.
- 완제품에서 CMR(발암물질, 돌연변이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의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Notification)를 해야 한다.
- REACH 적용 조건과 의무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	적용대상	적용조건*	의무사항
화학물질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등록
		고위험성 물질(SVHC)	허가 또는 제한
혼합물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각의 화학물질	화학물질별로 연간 1톤 이상	등록
완제품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화학물질별로 연간 1톤 이상	등록**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고위험성 물질(SVHC)이고 0.1중량%이며 연간 1톤 이상	신고**

\* 제조자 및 수입자 기준

\*\* 그 용도로 이미 등록(신고)된 물질의 경우는 제외(제7조6항)

\*\*\* 연간 톤수 결정방법은 과거 3년간의 평균치이다.

다. REACH 면제조항

(1) REACH 비적용 대상

- 방사능물질: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작업자와 일반대중의 건강보호와 관련된 기본적인 안전기준인 Council Directive 96/29/Euratom(1996년 5월 13일) 범위내의 방사능 물질
- 세관보관물질: 세관의 관리 하에 있는 물질자체 또는 혼합물이나 완제품내의 물질들로서, 어떠한 처리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일시적 저장 또는 재수출이나 경유를 위해 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에 있는 것
- 비분리 중간체
- 운송상의 위험물: 철도, 도로, 내륙수로, 바다 또는 항공편으로 위험물질과 위험한 혼합물내의 위험물질을 운송

(2) 등록, 평가, 허가 면제 대상

- Regulation (ECC) No 726-2004의 범위 내에서 인간 또는 수의학적(veterinary) 용도를 위한 의약품(Medical products)
- Council Directive 89/107/EEC(1998년 12월 21일)의 범위 내에 있는 식품용 식품첨가제
- Commission Decision 1999/217/EC (1999년 2월 23일)의 범위 내에 있는 식품의 향료
-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Regulation (EC) No 1831/2003 (2003년 9월 22일) 의 범위 내에 있는 사료 첨가제
- Council Directive 82/471/EEC(1982년 6월 30일)의 범위 내에 있는 동물 영양제

(3) 등록 및 평가 면제 대상

- 고분자물질: 고분자 물질 자체는 등록과 평가가 제외된다. 그러나 고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단량체 단위 및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이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는 등록해야 한다. 단, 상위공급자가 단량체를 등록한 경우 고분자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등록의무가 없다.

- 부속서 IV 물질: 최소의 위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물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물질로, 부속서 IV에 포함된 D-Glucito 등 68개 물질
- 부속서 V 물질: 등록이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속서 V에 해당되는 물질<sup>7)</sup>
  - 환경적인 요인에 노출되어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물질
  - 저장 중 우연히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물질
  - 최종 사용시 발생하는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물질(산화방지제, 충전제, 탈수제 등)
  - 그 자체로는 수입 또는 시장출시가 되지 않는 부산물
  - 물질이 등록된 이후 그 물질과 물이 결합하여 형성된 수화물 또는 수화이온
  -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예 : 광석, 천연가스, 석탄, 원유 등)
  - 유해성 및 위해성이 이미 잘 알려진 기초적인 물질들(수소, 산소 등)
  - EU에서 등록된 물질이 공급망내에 수출되고 그 수출자 또는 동일 공급망내의 다른 자로부터 EU 역내로 재수입되는 물질 자체 또는 혼합물내의 물질

#### (4) 허가 면제 대상

- 수송분리중간체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조제8항). 중간체가 엄격히 관리되는 상태에서 다른 물질을 합성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거나 사용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제18조). 단량체도 일종의 중간체이나 단량체는 중간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6조제2항)

#### (5) 등록 면제 대상

- 완제품의 의도적 배출 물질 또는 비의도적 배출 물질이 같은 용도로 이미 등록되었다면 그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또는 신고가 면제된다.(제7조제6항)

#### (6)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물질

- 식물보호제품
- 살생물제

---

7) 중소기업청, “REACH 사전등록가이드”, 2008

- Directive 67/548/EEC에 따라 신고된 물질(ELINCS 등재 물질). 단, 과거에 그 물질을 신고한 기업에만 해당됨
- \* Directive 67/548/EEC: 1981년 9월 이후 EU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화학물질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

(7) 5년간 한시적으로 등록의무 유예(1회에 한하여 5년 연장 가능)

- 제품 및 생산공정 R&D 용도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

## 8. REACH 절차

### 가. 사전등록

#### (1) 사전등록 개요

사전등록은 등록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로서, 사전등록을 함으로써 등록마감일까지 시간을 연장해 줄 뿐 아니라 물질정보교환포럼(SIEF)에 자동가입되어 물질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등록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즉, EU내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을 사전등록하면 2018년 6월 1일까지 등록을 유예받을 수 있다.<sup>8)</sup>

물질(특성)	톤 수	등록 유예기간(마감일)
CMR cat. 1,2 물질	연간 1톤/년 이상	REACH 발효 후 3.5년 (2010년 12월 1일)
R50/53 물질	연간 100톤/년 이상	
EU 제조·수입되는 물질	연간 1000톤/년 이상	
EU 제조·수입되는 물질	연간 100톤/년 이상	REACH 발효 후 6년 (2013년 6월 1일)
EU 제조·수입되는 물질	연간 1톤/년 이상	REACH 발효 후 11년 (2018년 6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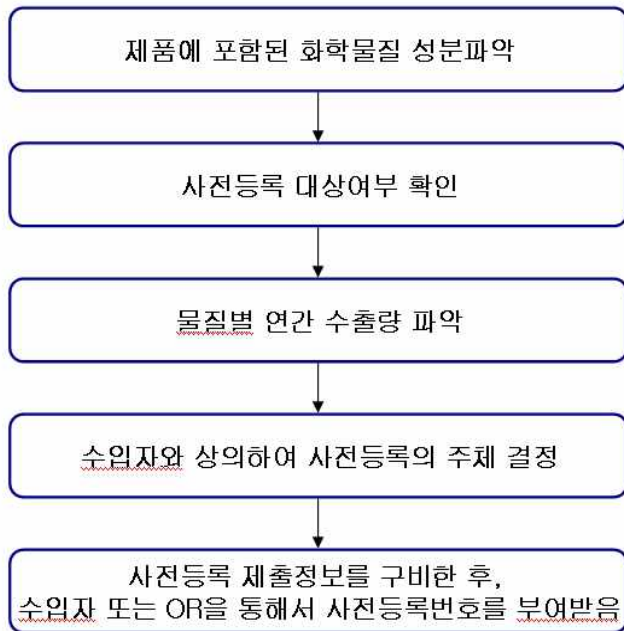
#### (2) 사전등록의 주체

사전등록 의무는 EU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EU 수입자가 사전등

8) 중소기업청, “REACH 사전등록가이드”, 2008.

록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EU 수입자가 사전등록 의사가 없거나 수입업자에게 물질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EU내의 유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한 물질을 EU 여러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에 유일대리인을 통하여 일괄 사전등록을 할 수도 있다.

(3) 사전등록 절차<sup>9)</sup>



a. 화학물질 성분파악

MSDS 성분내역서를 이용하여 제품 내 포함된 화학물질명과 조성비율을 파악해 본다. 물질의 기본정보(조성, 분자구조, 분자량, 순도 등)는 정확한 물질 확인과 명명을 위해 필요하다.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 자료

b. 사전등록 대상여부 확인

REACH 적용범위에 명시되어 있는 등록대상이 다음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존화학물질로 구분되며, 사전등록의 대상이 된다.

9) 중소기업청, “REACH 사전등록가이드”, 2008.



- 유럽화학물질 정보시스템(ESIS)의 EINECS에 등재된 물질
- NLP(No Longer Polymer) 물질: Directive 67/548/EEC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간주되었으나, 7차 수정안에 따라 더 이상 고분자로 구분되지 않는 물질
- REACH 시행일('07.6.1)로부터 15년 이전에 시장에 출시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물질

기존화학물질이 아닌 경우, 신규화학물질인지 확인해 본다.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바로 등록을 해야 한다.

c. 사전등록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① 유럽화학물질정보시스템(ESIS)에 접속(<http://ecb.jrc.it/esis/>)



EC 번호(EINECS번호/ELINCS번호/NLP번호) 검색

- ② CAS 번호검색: '%' 기호를 이용
- ③ 물질명 또는 IUPAC 이름 검색: '%' 기호를 이용

- ELINCS 검색



ENIECS를 클릭해서, 해당 물질의 EC번호, CAS 번호, 물질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검색한다.



ESIS는 화학물질데이터, 정보표시마크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시스템으로, 향후 분등 록에 필요한 정보를 구비할 때도 유용하다.

• NLP검색



NLP의 EC번호와 CAS번호, 물질명 별로 목록화가 되어있다.

#### d. 연간 수출량 파악

물질별로 연간 EU로 수입되는 양을 파악한다. 연간 EU로 수입되는 양이란, EU 내 제조자나 수입자 기준으로 이전 3년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 평균을 의미한다. 따라서 EU 내 제조자, 수입자 기준에서 연간 1톤 이상이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연간 1톤이 안되는 경우: 연간 1톤 이상은 EU 내 제조자나 수입자 기준이다. 따라서 EU 내 제조·수입자 입장에서 1톤이 넘을 수 있고, 현재는 연간 1톤 미만이라도 제조 또는 수입 예상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물질이 3년 연속 제조 수입되지 않는 경우: 해당 년도 톤수로 수입량을 파악할 수 있고, 최고 연간 톤수로도 산정할 수 있다.
- 처음 출시하는 제품이라서 연간 1톤 이상이 되는지 모를 경우: 등록하는 년도에 제조 또는 수입 예상 양으로 산정한다.
- 여러 법인에서 유럽으로 수입되는 경우: EU 제조·수입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e. 사전등록의 주체 결정

수입자와 상의하여 사전등록의 주체를 결정한다. 등록방법은 EU 수입자별로 등록하거나 유일대리인을 통해 일괄 등록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 EU 내 수입자나 현지법인이 할 경우: EU 수입자나 현지 법인에서 직접 등록할 경우, 등록주체가 요청하는 물질 정보를 제공한다.
- 유일대리인(OR)을 선임할 경우: REACH에서 등록 자격을 가진 자는 EU 내에 주소지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므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수입자를 대신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OR을 선임해야 한다. 그리고 OR과 계약을 하게 되면 OR이 모든 책임을 지고, 등록번호의 법적인 소유자가 되므로 계약 시 서류갱신, 서류보관, 정보전달, 기밀사항 등의 계약서 내용 및 준거법, 계약기간, 손해액 배상 등에 관한 명시 등에 유의하여 계약한다.

#### f. 필요서류준비

- 물질명(IUPAC, EINECS, CAS 등)

- 물질 기본정보(조성, 분자구조, 분자량, 순도 등)
- 등록예정자, 담당자 정보(성명, 연락처)
- 톤수 범위, 예정 등록시한
- Read-across 또는 QSAR을 이용한 물질에 대한 정보

\* IUPAC(International Union for Pure Applied Chemistry): 국제 순수 및 응용 화학연맹

g. 사전등록 접수 및 번호부여

서류가 갖춰지면 EU 수입자나 유일대리인이 EU화학물질청(ECHA) 홈페이지인 REACH-IT(<http://reach-it.echa.europa.eu/>)를 통해 접수한다. 접수 후 사전등록번호를 부여 받으며, 사전등록번호는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며 기업별로 별도의 번호가 부여된다. 사전등록의 홈페이지 화면은 아래와 같다.<sup>10)</sup>



- 물질명을 기입한다.(필수사항)

물질의 EC번호, EC명명, CAS번호, 분자식을 기입한다.

10) 중소기업청, “REACH 사전등록가이드”, 2008



- 유사한 물질명을 기입한다.

Read-across 나 QSAR를 이용하기 위한 유사한 물질명을 기입한다.



- 연간 톤수와 예상 등록마감일을 선택한다.(필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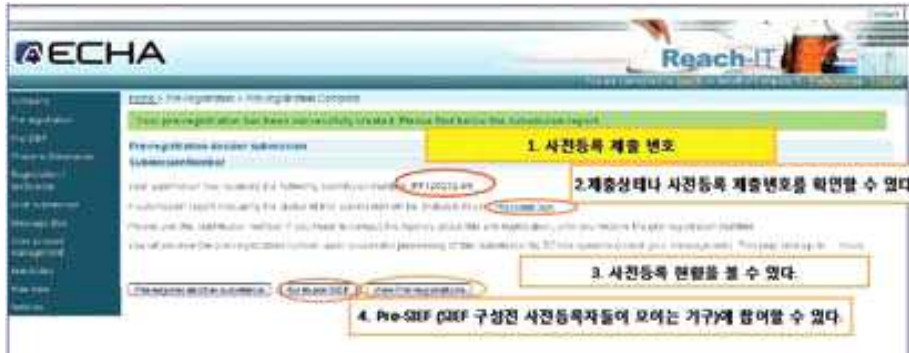


- SIEF 구성 시 담당자의 정보를 기입한다.



- 현재까지 기입한 정보들을 검토하고 제출한다.(필수사항)





- 사전등록 제출번호를 부여받는다.

#### h. SIEF 개설

사전등록 접수가 끝나면 2009년 1월 전에 사전등록된 물질이 공개되며, 물질별로 물질정보교환포럼(SIEF)이 개설된다. 사전등록을 한 기업들은 자동적으로 SIEF에 가입되어 SIEF에서 각 회원이 갖고 있는 정보를 비교 검토하고 부족한 자료의 작성법 및 비용을 논의하는 등의 등록준비를 하게 된다.

유일대리인(OR)을 선임한 경우에는 OR이 SIEF 활동을 하게 되며, OR을 통해 SIEF내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내용을 전달받는다. SIEF ID/PW를 공유해서 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SIEF에서 공동 또는 단독으로 등록한 이후,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정보는 10년간 유지, 보관해야 한다.<sup>11)</sup>

#### (4) 사전등록 이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sup>12)</sup>

- 완제품의 의도적 배출물질이 같은 용도로 이미 등록된 경우
- 고분자의 경우, 상위 공급자가 단량체 또는 기타 물질에 대해 등록한 경우
- 혼합물의 경우, 상위 공급자가 혼합물 내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한 경우

#### (5)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 사전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수출이 불가능하다.

11) 중소기업청, “REACH 사전등록가이드”, 2008

12) 중소기업청, “REACH 사전등록가이드”, 2008

- 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하려는 물질에 대해 이미 등록되었는지 문의를 해야 하며 (Inquiry process), 만일 그 물질이 12년 이내에 등록되었다면, ECHA는 등록예정자에게 등록 정보를 등록자에게는 등록예정자 정보를 알려주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등록절차를 밟게 된다.

(6)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1톤이상 수출하는 경우

최초 수출 후 6개월 이내에 사전등록서류를 제출하면 사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톤수별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톤수 범위별 등록 마감기간 12개월 전에 사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향후 1톤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적극적인 사전등록이 바람직하다.

## 나. 등록(Registration)

### (1) 등록대상

- EU 역내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
-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 1톤 이상의 화학물질
- 완제품 내에서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각 화학물질로 같은 용도로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

### (2) 등록주체

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전등록자가 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유일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전등록을 했다면, 그 대리인이 등록을 해야 한다.

### (3) 등록서류

#### a. 1톤 이상의 물질의 등록 기술서류

- ① 수입자 또는 제조자의 신원 - 각자작성
- ② 물질정보(identity) - 각자작성
- ③ 제조 및 용도에 대한 정보 - 각자작성
- ④ 분류 및 표지 - 공동작성
- ⑤ 물질의 안전사용에 대한 지침 - 공동 또는 각자작성



- ⑥ 톤수 범위별 연구요약문(Study summary) - 공동작성
- ⑦ Robust study summary(필요시) - 공동작성
- ⑧ 위 언급된, ③, ④, ⑥, ⑦에 대한 전문가 검증여부 표시 - 공동 또는 각자작성
- ⑨ 시험제안서(100톤 이상 물질) - 공동작성
- ⑩ 노출정보(부속서 4의 6) - 각자작성
- ⑪ 기업비밀 공개 제한 요청 - 각자작성

b. 10톤 이상 물질의 등록 서류

- 1톤 이상에서 제출하는 기술서류(⑩ 노출정보 제외)
- 안전성 보고서 (부속서 1) - 공동 또는 각자작성

(4) 등록절차

- 물질정보교환포럼(SIEF)에서 정보교환, 비용분담, 보상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등록서류를 갖추어 톤수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한다.
-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 선도등록자(lead registrant)가 공동항목에 대해 선등록을 한 후 나머지 등록자들은 각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게 된다.
- 기업비밀 등을 이유로 단독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으나 그 이유가 타당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다른 등록예정자와 함께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 처음 등록한 톤수 범위에서 벗어나 상위 톤수 범위에 해당된 경우에는 상위 톤수 범위에 해당되는 등록서류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5) 등록변경이 필요한 경우<sup>13)</sup>

- 등록자의 신원변경(회사명, 주소 등)
- 물질 조성의 변경
- 연간 총량의 변화
- 새로운 용도 추가

---

13) REACH 지원센터, “REACH 바로알기(발표자료) 2009.10”

- 새로운 위해성, 분류와 표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CSR 내용 변경 또는 update
- Testing proposal이 개발되어진 경우, 리스트된 실험 시행의 필요성 확인
- 등록 정보에서 승인된 내용의 변경

## 다. 신고(Notification)

### (1)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CMR(발암물질, 돌연변이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의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Notification)를 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제9조)

### (2) 신고기간

신고기간은 2011년 6월 1일 부터이며,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확정된 물질에 대해서는 2011년 5월까지가 기간이며, 그 후 확정된 물질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 (3) 신고주체

등록과 마찬가지로 수입자나 유일대리인을 통해 신고한다.

### (4) 신고서류

-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신원(Identity) 및 담당자 정보
- 등록번호(있는 경우)
- 물질정보(부속서 VI의 2.1~2.3.4)
- 물질분류 및 표지

- 물질의 용도에 관한 설명
- 톤수 범위(1톤~10톤 미만, 10톤~100톤 미만 등)

#### (5) 신고면제 조항

해당 물질이 같은 용도로 이미 등록되었거나(제7조6항), 폐기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사용이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노출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제가 된다.

### 라. 평가(Evaluation)

#### (1) 평가대상

화학물질청은 등록된 서류에 대한 평가와 물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 a. 서류평가

서류 평가에서는 등록서류의 완전성 및 작성기준에 대한 적합성과 시험제안서 등을 평가한다.

- 등록서류 평가는 전체 등록 서류의 5%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단독 등록한 경우와 10톤 미만 물질로 물질분석 정보를 다 갖추지 않은 경우에 대해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
- 시험제안서 평가에서는 100톤 이상의 물질 및 위해성이 큰 물질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 b. 물질평가

물질평가에서는 각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여 허가나 제한해야 할 물질을 찾게 된다.

#### (2) 평가주체

평가의 주체는 EU 화학물질청(ECHA)과 각 회원국이다.

#### (3) 평가결과 활용

화학물질청은 등록된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이나 시험제안서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된다.

## 마. 허가(Authorisation)

### (1) 허가 대상물질

현재 허가대상으로 예상되는 물질은 고위험성 물질(SVHC)인 CMR, PBTs, vPvBs,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으로, 사용하는 양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 CMR( Carcinogenic, mutagenic or toxic for reproduction):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 PBT(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 물질

\* vPvB( 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고 잔류성, 고 생물농축성

### (2) 허가내용

- 일반적인 물질 사용허가가 아니며, 특정 용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각 건별로 허가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허가기간 만료 18개월 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 시한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당 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 (3) 허가서류

- a. 물질정보(부속서 6)
- b. 신청자 성명 및 세부연락처
- c. 허가 신청 물질의 용도
- d.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등록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e. 물질 대체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실행가능성 분석
- f. 물질 대체 계획(대체 가능한 경우)

### (4) 허가신청 주체

허가 신청도 등록과 마찬가지로 EU 수입자 또는 우리 기업이 선임한 유일대리인이 해야 한다. 신청서는 화학물질청에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5) 허가신청 기한

- 허가 물질 목록이 발표되면 그 물질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sunset date)가 정해진다. 허가 신청은 sunset date로부터 18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 허가된 물질에 대한 재신청은 허가 기간 만료일 18개월 전에 해야 한다. 허가신청 서류를 다시 내지 않고 처음에 부여된 승인번호와 함께 변경된 부분만 갱신하여 제출하면 된다.

(6) 허가물질의 등록

등록과 허가는 별도로 진행된다. 등록대상 요건에 해당되면 등록을 해야 하며, 그 물질이 허가 대상 이면 허가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한다.

(7) 허가면제 조항

허가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면제 조항은 7. 다. REACH 면제조항 참고.

다음의 경우 허가가 면제된다.

- 과학적 연구개발 용도의 물질
- 식물보호 제품
- 살생물제
- 차량 연료에 사용되는 물질
- 미네랄 오일 제품을 이동식 또는 고정식 연소플랜트, 그리고 밀폐시스템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 화장품에 사용되는 물질
- 식품 접촉 물질
- 혼합물 내 0.1% 미만의 물질
- 67/548/EEC, 1999/45/EC에 명시된 농도한계 미만의 물질
- 용도나 용도의 카테고리에 대해 위험성이 적절히 관리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 바. 제한(Restriction)

### (1) 제한내용

물질자체, 혼합물 또는 완제품 내의 제한 물질에 대한 제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포함된 물질, 혼합물, 완제품을 제조, 시장 출시 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2) 제한물질 목록

현재 제한물질 목록은 부속서 17에 수록되어 있다.

### (3) 적용 시기

물질 사용 및 수입 제한은 2009년 6월부터 시행되며, 제한되는 물질별로 제한 시점이 다를 수 있다.

### (4) 제한 면제 조항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의 제조, 시장출시,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화장품에 사용되는 물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9. REACH 대응 전략<sup>14)</sup>

우선 EU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각 품목이 화학물질인지, 혼합물인지, 완제품인지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 가. 화학물질(Substance) 대응

- (1) 화학물질의 성분을 분석하여 명명하고 분류한다.
- (2) 등록 면제대상이나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물질인지 확인한다.
- (3) 대상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지 확인한다.
- (4) 대상 화학물질이 기존물질인지 신규물질인지 확인한다.

---

14) REACH 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 REACH 가이드북”, 2008.

- (5) 기존물질인 경우 사전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 (6) 신규물질인 경우 2008년 6월부터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 혼합물(Preparation) 대응

- (1) 혼합물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목록을 작성한다.
- (2) 혼합물의 각 화학물질 별로 '화학물질 대응 순서'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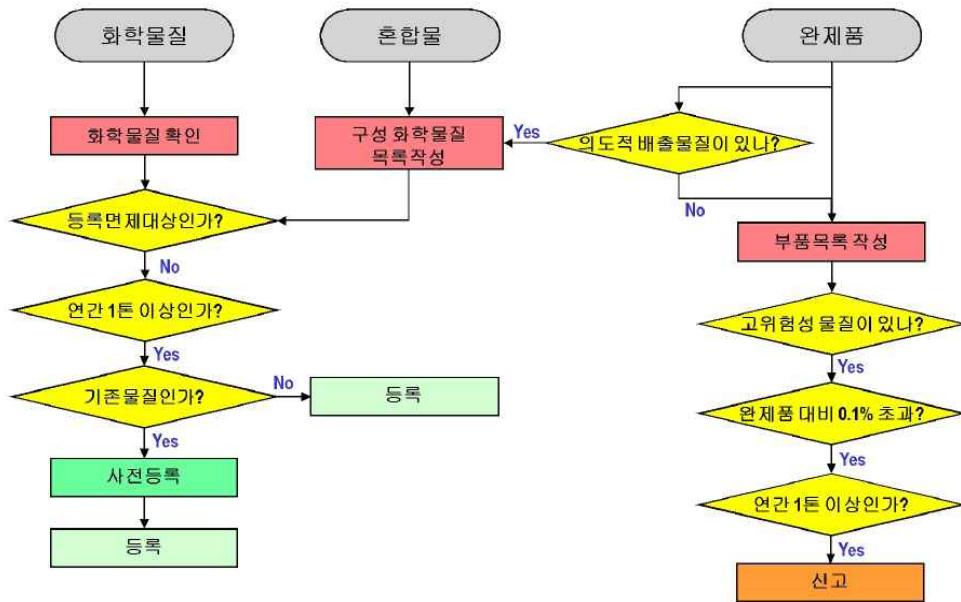
다. 완제품(Article) 대응

- (1) 완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목록을 작성한다.
- (2)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있을 경우에는 각 화학물질 별로 '화학물질 대응 순서'에 따른다.
- (3) 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부품에 대한 물질정보를 요청한다.
- (4) 각 부품별로 고위험성 물질(SVHC)이 있는지 확인한다.
- (5) 고위험성 물질이 있을 경우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 절차를 따른다.

라. 적용 대상별 REACH 대응절차<sup>15)</sup>

---

15) REACH 기업지원센터, "REACH 바로알기(발표자료) 2009"



마. 비용절감 대응방법

< REACH 대응 비용 절감 요소 >

항목	내용	근거
면제 대상 확인	REACH 예외 조항 활용	제2조
사전등록	사전등록비 없음.	제74조
연간 1톤 ~ 10톤 물질	부속서 7의 자료 제출시 등록비 면제	제74조제2항
	부속서 3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물리화학성질 자료만 제출(물질자료 비용 절감)	제12조제1항(b)
수송분리중간체 (모노머는 제외)	등록서류 간소화 1000톤 이상일 때에만 부속서 7의 자료제출 등록비용은 일반 물질 1톤~10톤과 같음.	제18조
물질자료 확보	보유자료 및 무료 활용가능한 자료 확보 물질자료 소유자에게 사용권한 획득 SIEF에 참여(사전등록), 물질정보 교환, 비용 분담	제30조
공동 등록	SIEF에서 공동등록 추진 공동등록시 등록비 감면	제74조제3항
모노머(단량체)	상위 공급자가 등록한 경우 면제 상위 공급자의 등록 여부 확인	제6조제3항
완제품에서의 의도적 배출 또는 비의도적 배출물질	같은 용도로 이미 등록한 경우 등록 제외 같은 용도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제7조제6항
동일한 OR(유일대리인)선정	같은 물질에 대해 한 OR을 선정하면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 소요	-

10. 해외 대리인 정보



<b>이름</b>	<b>Allen&amp;OveryLLP</b>	<b>Azelis</b>	<b>BASF</b>
<b>담당</b>	GauthiervanThuyne,Partner	Stefano Colicchia, Corporate SHEQ Director	Dr. Susanne Demharter
<b>주소</b>	Tervurenlaan268A1150 Brussels	Via L.Da Vinci, 43 20090 Trezzano Sul Naviglio (MI)	AktiengesellschaftGU/C M-Hemshofcenter6705 6LudwigshafenGermany
<b>전화</b>	+ 32 2 780 25 75	+ 39-02-484791	+ 49 621 60-43555
<b>팩스</b>	+ 32 2 780 23 46	+ 39-2-48479405	+ 49 621 60-43349
<b>E-mail</b>	gauthier.vanhuayne@allenovery.com	reach@azelis.com	susanne.demharter@basf.com
<b>이름</b>	<b>CHEMSERVICE S.A.</b>	<b>ChemRisk, Inc.</b>	<b>Ciba Expert Services</b>
<b>담당</b>	Dr. Dieter Drohmann	E. Spencer Williams, Ph.D.	InekeGubbels
<b>주소</b>	51,RoutedeMondorfL-5552RemichLuxemburg	10375RichmondAvenueSuite350Houston,TX77042	SwissNoordkustlaan181702Groot-Bijgaarden
<b>전화</b>	+ 352-2666-4923	+ 1 713 974 6200	31412642059
<b>팩스</b>	+ 352-2666-4924	+ 1 713 974 6111	31412642059
<b>E-mail</b>	info@chemservice-group.com	swilliams@chemrisk.com	ineke.gubbels@cibas.com
<b>이름</b>	<b>Covington &amp; Burling LLP</b>	<b>EPPA Partnership scrl</b>	<b>ERA Technology Ltd</b>
<b>담당</b>	Peter Bogaert	Julius Waller	Paul Goodman
<b>주소</b>	Kunstlaan44BE-1040Brussels	2placedeLuxembourgBE-1050Brussels	CleeveRoadLeatherhead,SurreyUKKT227SA
<b>전화</b>	+ 32 2 549 52 30	+ 32 2 735 82 30	+ 44 1372 367 444
<b>팩스</b>	+ 32 2 502 15 98	+ 32 2 735 44 12	+ 44 1372 367 134
<b>E-mail</b>	pbogaert@cov.com	julius.waller@eppa.com	rfa@era.co.uk
<b>이름</b>	<b>Eamonn Bates Europe</b>	<b>Euro Safety and Health</b>	<b>Exponent International</b>
<b>담당</b>	Roger Axford	Sean Mahar	Alec Willis
<b>주소</b>	13-15AvenueLivingstoneBrussels, BE-1000	2TheDanaShrewsburySY12HPUK	TheLenzHornbeamBusinessParkHarrogate,HG28REUK
<b>전화</b>	+ 32 2 286 9494	+ 44 1743 362076	+ 44 1423 853216
<b>팩스</b>	+ 32 2 286 9495	+ 1 (413) 702-9707	+ 44 1423 810431
<b>E-mail</b>	raxford@eamonnbates.com	sean@eurosh.com	awillis@uk.exponent.com
<b>이름</b>	<b>H2 Compliance</b>	<b>HUNTON &amp; WILLIAMS</b>	<b>Harlan Laboratories Ltd.</b>
<b>담당</b>	Kevin Hoban	Nicolas Herbatschek	원창덕 본부장
<b>주소</b>	Ireland	parkAtriumRueDesColonies111000Brussels,Belgium	Switzerland/korea
<b>전화</b>		+ 32 (0) 2 643 58 39	+ 82 2 6001 3092
<b>팩스</b>		+ 32 (0) 2 643 58 22	
<b>E-mail</b>	hoban@h2compliance.com	nherbatschek@hunton.com	CWon@harlan.com

<b>이름</b>	<b>Intertek</b>	<b>KIST Europe</b>	<b>KTR Europe GmbH</b>
<b>담당</b>	Ursula Schumacher	Sang Hun Kim	전혜송
<b>주소</b>	IntertekTestingServices Ltd.,Shanghai 9/F,BuildingNo.2(East)ShanghaiComalongIndustrialPark889YiShanRoad, Shanghai,China,200233	Universit?desSaarlanddes,CampusE71D-66123Saarbr?ken Germany	Mergenthalerallee77,65760Frankfurt/Eschborn, Germany
<b>전화</b>	+ 86 21 61213010 60917048	+ 49 (0) 681 9382-334	+ 49.177.5384288/+ 82-2-2164-0035
<b>팩스</b>	+ 86 21 64954520	+ 49 (0) 681 9382-319	+ 82-2-2671-5742
<b>E-mail</b>	ursula.schumacher@intertek.com	shkim@kist-europe.de	hschoun@ktr.or.kr
<b>이름</b>	<b>Keller &amp; Heckman LLP</b>	<b>Mayer Brown Rowe &amp; Maw</b>	<b>McKenna Long &amp; Aldridge LLP</b>
<b>담당</b>	Curil Jacquet	Jean Philippe Montfo	Ursula Schliessner
<b>주소</b>	523AvenueLouiseB-1050Brussels	AvenuedesArts52,BE-1000Brussels	AvenuedeTervueren2BE-1040Brussels
<b>전화</b>	+ 32 2 645 50 96	+ 32 (0)2 551 5961	+ 32 2 278 12 11
<b>팩스</b>	+ 32 2 541 0580	+ 32 (0)2 551 5421	+ 32 2 278 12 00
<b>E-mail</b>	jacquet@khlaw.be	JPMontfort@mayerbrownrowe.com	brussels@mckennalong.com
<b>이름</b>	<b>NOTOX</b>	<b>PSRG INC.</b>	<b>Penman Consulting BVBA</b>
<b>담당</b>	Ing. Chris de Ries	Robert J. Weber	Mike Penman BSc MBE
<b>주소</b>	NOTOXB.V.Hambakenwetering7P.O.Box34765203DL's-Hertogenbosch TheNetherlands	800WestSamHoustonParkway South,Suite107,Houston,Texas77042	SintHubertuslaan253080,Tervuren,Belgium
<b>전화</b>	+ 31 (0) 73 640 67 00	+ 1 713 532 8800	+ 32 2 305 0698
<b>팩스</b>	+ 31 (0) 73 640 67 99	+ 1 713 532 8850	+ 32 2 305 0698
<b>E-mail</b>	chris.de.ries@notox.nl	psrghouston@psrgroup.com	Mike@PenmanConsulting.EU
<b>이름</b>	<b>PricewaterhouseCoopers</b>	<b>ROR(Reach Only Representative Ltd)</b>	<b>Royal Haskoning</b>
<b>담당</b>	Paulus Wijffels	Ben Gandhi	M.Th. (Ren? de Kok
<b>주소</b>	Netherlands	20BostockHallBostockCheshireCW109JNUnitedKingdom	Barbarossastraat35P.O.Box1516500ADNijmegenTheNetherlands
<b>전화</b>	+ 31 (0)10 407 66 37	+ 44 (0) 1606 860197	+ 31 (0)24 3284284
<b>팩스</b>		+ 44 (0) 1606 860198	+ 31 (0)24 3604737
<b>E-mail</b>		info@rorltd.com	r.dekok@royalhaskoning

			g.com
<b>이름</b>	<b>SGS</b>	<b>SWIT Deutschland GmbH</b>	<b>TSGE</b>
<b>담당</b>	Celine Raffard	김용관 팀장	Matt Curl
<b>주소</b>	SGSManagementServices191,av.AristideBriand	SGSManagementServices191,av.AristideBriand	ConcordiaHouseStJames BusinessParkGrimbaldC ragCourtKnaresborough NorthYorkshireHG58QB SGSManagementService s191,av.AristideBriand
<b>전화</b>	+ 33 (0) 1 41 24 88 03	+ 49 (0)231 9742 7044	+ 44 (0) 1423 799 633
<b>팩스</b>	+ 33 (0) 1 41 24 84 13		+ 44 (0) 1423 797 804
<b>E-mail</b>	celine.raffard@sgs.com	info@reach-korea.com	matthew.curl@tsgeurope.com
<b>이름</b>	<b>TUV Rheinland BioTech GmbH</b>	<b>The Redstone Group, LLC</b>	
<b>담당</b>	Dr. Michael Urban	Mark T Vagasky	
<b>주소</b>	TUVRheinlandBioTech GmbHDr.MichaelUrban	6397EmeraldParkwaySuite20 0Dublin43016Ohio	
<b>전화</b>	+ 49-221/690 589 14 (+ 82-2-860-9860)	+ 1 614 923 9077	
<b>팩스</b>	+ 49-221/690 589 13 (+ 82-2-860-9862)	+ 1 614 793 9070	
<b>E-mail</b>	Hae-Jung.Lee@kor.tuv. com	mvagasky@redstonegrp.com	